

배경 - IHSS/WPCS 병가

SEIU 로컬 2015는 IHSS/WPCS 제공인의 코로나19 병가혜택을 위해 주정부에 투쟁했고 최근에 승리해냈습니다. 이번 중요한 승리로 팬데믹에서 병가를 낸 제공인들은 병가 수당을 받게 됩니다

제공인들은 다음 경우에 이 혜택을 신청해도 됩니다 (a) 격리 상태 (b) 격리 중인 자녀나 다른 사람을 간병하는 경우. 또는 (c) 백신을 맞거나 백신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 이 혜택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시간은 얼마나 신청해도 됩니까?

제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 근무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1. 풀타임 제공인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80시간 병가를 허가받습니다.
2. 파트타임 제공인은 2주 주급기간에 평균 근무시간을 허가받습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25시간 근무한 제공인은 50시간 유급병가를 받습니다.
3. 모든 제공인은 코로나 백신접종 예약마다 2시간까지 신청을 제출해도 됩니다.
4.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일을 빠진 모든 제공인은 실제 빠진 시간에 대해 신청을 제출해도 됩니다.

제공인은 전체 혜택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유자격시간으로 전부 합하기 위해 신청서를 여러개 제출해도 됩니다.

병가혜택에 어떻게 자격이 됩니까?

제공인은 코로나19 병가혜택에 자격이 되려면 다음 조건 중 한 가지에 맞아야 합니다. 상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제공인도 병가혜택을 신청해도 됩니다.

1. **격리 (다음중 한가지):**
 - a. 격리나 분리 명령을 받은 경우
 - b. 헬스케어 제공인이 자가격리를 권한 경우
 - c. 증상이 있고 의료진단을 받으려는 경우.
2. **간병의무 (다음 중 한가지):**
 - a. 격리나 분리받는 사람을 간병하는 경우
 - b. 코로나19 예방조치로 학교나 유아원이 문을 닫아서 자녀를 돌봐주고 있고,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3. **백신접종 (다음 중 한가지):**
 - a.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는 의료 예약 (2시간)
 - b.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된 부작용이 있는 경우.

만일 몸이 아프면, 코로나19로 아픈 가능성이 있거나 코로나19에 노출된 경우, 수혜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혜자에게 연락하여 못한다고 알려주어야 하며 건강해질때까지 그쪽에서 다른 제공인을 찾기 위해 도와달라고 지역 사무실에 연락합니다.

코로나19 병가를 이미 신청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2021년 3월에 법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주정부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0년 비상사태 유급병가법(EPSLA)으로 제공된 연방정부 일회적 병가혜택과 다릅니다. **EPSLA로 병가를 신청한 제공인은 이 새로운 캘리포니아 법으로 병가를 신청해도 됩니다.**

EPSLA는 2020년 4월2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새로운 캘리포니아 주 병가혜택은 2021년 1월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어떻게 신청합니까?

병가혜택을 신청하는 IHSS/WPCS 제공인은TEMP 3021 (3/21)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 제공인 개인정보, 수혜자 개인정보, 신청날짜, 병가신청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온라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cdss.ca.gov/Portals/9/Additional-Resources/Forms-and-Brochures/2019/Q-T/TEMP3021.pdf>